

태양광발전소종합보험

신용정보 제공 ·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 · 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리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1566-8000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서면접수 : 고객지원센터 방문
-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 (02) 316-0475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준법감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 (02) 3702-8603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길 50 케이트윈타워 B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 (02) 3145-5427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안팀

태양광발전소종합보험 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1

주요내용 요약서 3

보험용어 해설 5

주요민원사항 6

보험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10

태양광발전소종합보험 보통약관 12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보험금의 청구)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7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9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2조(청약의 철회)
제1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4조(계약의 무효)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6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2조(계약의 해지)
제2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25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조정)
제27조(관할법원)
제28조(소멸시효)
제29조(약관의 해석)
제3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2조(개인정보보호)
제33조(준거법)
제3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1부분 재물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8조(현물보상)
제9조(잔존물)
제10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11조(준용규정)

제2부분 기업휴지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4조(다른 사업장에서의 이익조항)
제5조(일부보험)
제6조(사업장별 적용 조항)
제7조(기록의 보존)
제8조(준용규정)

제3부분 배상책임손해조항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제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제6조(보험금의 분담)
- 제7조(손해방지의무)
-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제9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제10조(양도)
- 제11조(조사)
- 제12조(준용규정)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일반조항 제6조 제2항 관련)

- 태양광발전소종합보험 특별약관 32

- 일반조항 특별약관 32
 - 적용환율 특별약관 32
 - 공동인수 특별약관 32
 -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I) 32
 - 하나의 사고(72시간) 특별약관 33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33
 -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33
 - 제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34
 - 테러행위 부보장 특별약관 34
 - 대주단 보호조항 35
 -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PROPERTY TREATY (RE)INSURANCE) [LMA5394]6... 3
 -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LMA5399] 37

-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 특별약관 38
 - 연속사고 조항 38
 -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특별약관 38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38
 - 전문용역비용 담보 특별약관 39
 - 제조달가액 특별약관 39
 - 잔존물 제거비용 담보 특별약관 39
 - 공공기관 특별약관 40
 - 소규모 공사 특별약관 40
 - 소방비용 특별약관 41
 - 추가재산 확장담보 특별약관 41
 - 특별비용 담보 특별약관 41
 - 위험물질 제거비용 담보 42
 -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약관 42
 - 실손보상 특별약관 42

- 제2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특별약관 43
 -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특별약관 43
 -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43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43

- 제3부문 배상책임손해조항 특별약관 45
 - 자연재해보장 특별약관 45
 - 추가피해방지비용담보 특별약관 45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46
 - 물적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 46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47
 - 전염병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47
 - 전기공급차질 부담보 특별약관 48
 - 실리카 부담보 특별약관 48
 - 전자파, 전자장(EMF) 부담보 특별약관 48
 - 임차자 특별약관 49

- [별표] 단기요율표 51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가) 신체보장 관련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의 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나)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관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전 • 후 알릴 의무

가)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등

2) 배상책임보험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3) 화재보험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 관계자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환급보험료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기간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주요민원사항

1.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가. 비례보상 관련

1) 사례

A씨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던 당시, 취급자로부터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할 경우 사고발생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처리 받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요율인상은 없다는 안내를 받아 해당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함. 얼마 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청구 접수하자, 피해목적물의 실제 재조달금액에 한참 미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불만을 제기함

2) 유의(참고) 사항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보상처리함. 단,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할 경우 재조달가액(피해 목적물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처리되며, 이는 보상처리의 기준이 변경되는 것일 뿐 이로 인한 위험의 증가가 없으므로 요율의 인상은 없음.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보험에 의한 비례보상 원칙은 변함이 없으므로, 보상처리의 기준인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야 하며, 주택물건의 경우 약관상 80% 부보비율 충족시 이를 전부보험으로 보므로 해당 목적물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나.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적용제외에 따른 환급보험료 관련

1) 사례

A씨는 연말에 이르러, 연초에 가입한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제외 배서를 요청하였으나 환급보험료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불만 제기함

2) 유의(참고) 사항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보험기간 중 적용제외할 경우의 환급보험료는, 요율서상 명시된 단기요율이 적용되어 산출되며, 특히 태풍으로 인한 풍수재사고발생 위험이 집중된 7월, 8월, 9월에 대하여는 각 월에 대하여 10%씩 가산하여 적용하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계약의 풍수재위험담보에 대한 환급보험료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2.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가. 상해보험 면책사항 관련

1) 사례

전문등반을 취미로 하고 있는 A씨는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산악동호회 회원들과 설악산 암벽등반을 하던중 추락하여 척추의 장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상해 후 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2) 유의(참고) 사항

상해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는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선박승무원 등 위험이 큰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함
특수운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등 해당 위험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해당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나.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 공제 관련

1) 사례

A씨는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당해 통원치료 후 병원 외래진료비 및 약국 처방조제비를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손의료비 청구금액과 지급보험금이 달라 불만 제기

2) 유의(참고) 사항

약관에 의거하여 통원의료비의 경우 요양기관의 분류에 따라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공제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가입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

다. 여행보험 가입 후 고가의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보상한도

1) 사례

A씨는 신혼여행중 구입한 목걸이를 분실한 사고를 당하여,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고 귀국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만 보상이 가능함을 알고 불만제기

2) 유의(참고) 사항

일반적인 여행보험 상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품 한 개당 보상한도를 20만원까지만 제공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라. 여행보험 가입 후 물품을 분실한 경우 보상여부

1) 사례

B씨는 1달간의 유럽여행중 관광지에서 화장실에 들러 세면을 하면서 시계를 풀러 놓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여 시계를 분실, 이에 귀국하여 시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불만 제기

2) 유의(참고) 사항

대부분의 여행보험 상품은 '분실'이 아닌 '도난' 또는 '파손'에 의한 물품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함.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을 발급받아 귀국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함

마. 골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골프용품물 도난 당한 경우 보상여부

1) 사례

A씨는 평소 골프를 즐겨 골프장 내에서의 사고를 담보하는 골프보험을 가입하였고,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차량 트렁크안에 보관하던 골프채를 도난 당한 사실을 알고 골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골프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불만 제기

2) 유의(참고) 사항

골프보험의 경우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골프시설(골프장 또는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중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골프시설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함. 보통약관에 정한 골프용품 손해 외에 골프장 구내에 위탁보관 중 또는 골프장 구내 밖의 장소에서 입은 골프용품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골프용품손해 확장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여야함.

이 주요민원 사항은 통상적인 민원사항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센터(1566-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종합보험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입은 아래의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1. 재물손해조항 :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
2. 기업휴지손해조항 :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조업이 재물손해조항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중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손해
3. 배상책임손해조항 :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100\text{원(원금)}+100\text{원}\times 10\%(1\text{년차이자})+[100\text{원}+100\text{원}\times 10\%]\times 10\%(2\text{년차 이자}) = \text{총}121\text{원}$$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4. 보상 관련 용어

- 가.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라. 테러: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한다

② 재물손해조항, 기업휴지손해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 계약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피보험자가 운영, 소유, 작동, 보호, 관리, 통제 중인 보험증권에 기재되거나 별도 합의한 양식에 따라 회사에 통지된 설비, 기계, 전기 및 전자장치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배상책임손해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 계약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3부분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각 담보 조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전 부문에 걸쳐 아래의 사항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생긴 손해 및 이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2.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3. 위 제2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4.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다만,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중과실(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하 같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 방법 포함)

- 3. 손해액의 조사 및 확정에 필요한 장부나 회계서류 및 이와 관련된 증거서류, 자료, 설명서 등
- 4.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피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피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9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3.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이전한 경우

-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 시설의 용도 또는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는 경우
 -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 시설을 30일 이상 정비, 수리하거나 계속하여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6.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2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6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편 보험료의 납입

제1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일반조항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4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2조(계약의 해지) 및 각 부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1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 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2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편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2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이 약관 각 부문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5조(보험료의 환급)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제25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재물손해조항 및 기업휴지손해조항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제7편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장】 계약의 청약의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함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함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함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2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에만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정되거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

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제1부분 재물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화재
 - 2. 자연재해(지진, 분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풍재, 수재 및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3. 종업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 4.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 5. 단락 등 전기적 현상
 - 6. 기타 일반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부분 재물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 ②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되거나 별도 합의한 양식에 따라 회사에 통지된 설비, 기계, 전기 및 전자장치 등으로서 사업장 구내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건설 중이거나 조립 중인 자산
 - 2. 시험운행을 마치지 않은 기계, 전기 및 전자장치
 - 3. 공공도로, 철도기관차, 선박, 항공기, 우주선, 부유물, 자동차등
 - 4. 돈, 우표, 증서, 부채, 미술, 작품들, 고서적, 보석, 귀금속, 고가의 돌, 가치 있는 문서들
 - 5. 도로, 활주로, 철길, 댐, 저수지, 물, 운하, 드릴장비, 우물, 파이프라인, 터널, 다리, 독, 선창, 부두, 해상자산
 - 6. 식물과 동물
 - 7.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자산
 - 8. 원자력 발전소 외의 시설에 설치된 원자로, 원자로 건물 및 그 안에 있는 설비
 - 9. 상기에 언급한 것 이외에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자산
 - 가. 핵연료 발전 또는,
 - 나. 핵연료의 생산, 사용 또는 저장
 - 10. 보험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전환되었거나 임대, 리스, 시설대여, 매매된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 ② 누출이나 오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긴 기계장치의 손해 또는 사용손실 또는 누출, 오염 또는 오락 물질의 제거, 중화 또는 청소비용
- ③ 전기, 연료, 물, 가스, 증기 또는 냉각물을 포함한 공급물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
- ④ 공급자, 시공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 ⑤ 조레 또는 법률의 신설, 변경 및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환, 수리비용
- ⑥ 서서히 진행된 변형, 뒤틀림, 균열, 금, 수포, 박막, 흠 또는 결함있는 튜브 이음매나 여타 결함있는 이음매 또는 봉합선의 교정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목적물에 끼친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⑦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⑧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실이나 손실 또는 단순제조조사나 현황파악에서 발견되는 손실이나 소멸

- ⑨ 수축, 증발, 발효, 중량의 감소, 원재료, 재공품, 완성품의 오염 또는 품질의 변화 (단, 이 보험증권에서 면책하고 있지 않은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은 제외됩니다.)
- ⑩ 보험의 목적의 마모 및 마멸, 점진적인 성능 및 기능 저하 또는 노후화, 부식, 금속 피로 현상, 산화, 자동산화, 습기, 온도나 습도의 변화, 공기 또는 빛의 작용, 자연발열 혹은 건조로 생긴 손해
- ⑪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형,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 단,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⑫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
- ⑬ 피보험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및 해석하는 과정상의 오류 및 불능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
- ⑭ 보험의 목적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비용
- ⑮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간접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 및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
- ⑯ 법률, 조례 또는 어떤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차한 재물에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
- ⑰ 잠재적인 결함을 복구, 수리, 개선하기 위한 비용손해
- ⑱ 생산, 시험, 수리, 청소, 저장, 개조 중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자기의 비용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를 입은 물건은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유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동의하였거나 위 제1항의 통지 후 7일 이내에 손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손해상황조서, 수리견적서, 신품견적서 및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서류, 장부, 기타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을 완전히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 또는 작동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임시 수리하여 사용 또는 작동시킬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제6조(손해방지의무)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가입금액의 신조달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위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④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과 같은 종류, 같은 능력의 새로운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의 가액(사업장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 조립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이하 「신조달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 ⑤ 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이 제4항의 신조달가액에 부족하거나 초과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1회의 사고마다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규정한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한사고로 인하여 수개의 보험의 목적이 각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합계에서 자기부담금 중 최고액(자기부담금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② 손해발생 시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신조달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신조달가액에 대한 비율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 \text{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가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신조달가액}} - \text{자기부담금}$$

-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신조달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frac{\text{손해액} \times \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 2.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제조달가액은 동종, 동능력의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요된 해체 및 제조립비용을 포함합니다. 어떤 품목이 수리 또는 대체되지 않은 경우, 손해사정의 기초는 그 재물의 실제 가액입니다.
 - ③ 아래의 비용은 위 제1항의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항공운임, 급행운임, 시간의 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따른 할증임금
 - 2. 임시수리비. 그러나 본 수리비의 일부로 인정되고 총 수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손상을 입은 부분을 수리함에 따라 손상되지 않은 다른 부분을 교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4. 모양의 변경 및 개량으로 증가되는 비용
 - 5.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한 분해, 정비, 건조, 청소비용 또는 응고, 막힘, 이 물체의 부작, 침수 등 이와 비슷한 상태를 제거하는 비용
- ④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 보험의 목적의 손상부분(부품)에 대해서 신규교환이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위 제1항의 손해액에 포함합니다.
- ⑤ 잔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합니다.
- ⑥ 보험의 목적이 전부손해인 경우, 손해발생 직전의 제조달가액에서 사용에 의한 감가를 공제한 것을 제1항의 1의 비용으로 하며 부분손해가 나더라도 수리비용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같은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9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0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부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제2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조업이 이 보험의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중단 또는 휴지(休止)되어 면책기간을 제외한 보상기간 동안 생긴 손해(이하 「기업휴지손해」라 합니다)를 이 부문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문에 한하여 적용하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목별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일반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원인으로 생긴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증권상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지진, 화산의 분화, 쓰나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 2.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법률 규제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 3. 사고발생 이후 조업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이거나 결과적인 기업휴지손해
 - 4. 안전한계치를 초과한 시운전 또는 고의적인 과부하, 실험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초래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의해 생긴 기업휴지손해
 - 5.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제3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과 특별비용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 : 사고로 인하여 보상기간 중의 매출액이 표준매출액에 미달되어 생긴 매출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 특별비용: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 다만,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보상기간 중에 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가 생겼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방지 또는 경감된 매출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총이익에 포함된 비용으로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보상기간 중에 지출이 중지되거나 감소되어 절약된 비용은 손해액에서 뺍니다.
 - 4. 회사의 보상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조(다른 사업장에서의 이익조항)

보상기간 중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이익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받은 금액이나 앞으로 받을 금액은 보상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제5조(일부보험)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이 사고일 직전 12개월 동안의 총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가입금액에 대한 사고일 직전 12개월 동안의 총이익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사업장별 적용 조항)

사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수행되고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영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이 약관의 규정은 손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각 사업장별로 독립으로 적용됩니다.

제7조(기록의 보존)

피보험자는 최근 3년간의 재고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대차대조표등의 모든 회계기록을 완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훼손에 대비하여 이들 기록을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부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준용합니다.

<p>【 용어의 정의 】</p> <p>1. 총이익 매출액과 기말 재고액의 합계액에서 기초 재고액과 변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기초 재고액과 기말 재고액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회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p> <p>2. 특정변동비용 이 약관에 의해 보험가입되지 않는 변동비용으로서, ① 매출 및 매입에 따른 세금 ② 매입대금 (할인은 공제함) ③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의 경우 변동되어지는 여하한 비용을 말합니다.</p> <p>3. 매출액 상품의 판매나 인도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얻었거나 얻을 금액 (할인은 공제함)</p> <p>4. 보상기간과 면책기간 보상기간은 피보험자의 조업에 영향을 미친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보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그러나 보험자는 면책기간 동안에 생긴 손해액은 보상하지 아니하여 면책기간은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를 야기 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시됩니다.</p> <p>5. 총이익율 사고일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총이익의 비율</p> <p>6. 표준매출액 사고일 직전 12개월부터 보상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매출액. 위 5, 6은 사업의 추세와 사고 전후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고가 없었다면 사업에 영향을 주었을 변화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p> <p>7. 연간매출액 피보험자의 사업이 정상 상태로 복구된 날 또는 보상기간이 끝나는 날 (먼저 발생한 것에 따릅니다)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에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p>

제3부문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애(이하 「신체장애」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리(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④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⑤ 전자기파, 전자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⑥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⑧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⑨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⑩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 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⑪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⑫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⑬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2.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 ⑭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로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⑮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⑯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

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출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송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피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입유나 가입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이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0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부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용어 정의>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 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리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 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보장지역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호의 국가로 또는 위 1호의 국가에서 위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 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호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위 1호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나. 위 1호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자동차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건설기계(6종 중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더, 스kre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며,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에어컴프레서,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2)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6) 위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 제2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2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3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4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 제2항의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하나의 사고(72시간) 특별약관

제1조(하나의 사고 기준)

- ① 회사는 아래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연속적인 72시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1. 지진, 분화
 2. 태풍, 화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3.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연속적이든 산발적이든, 동일한 지진학적 또는 기상학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③ 일련의 사고는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처음 발생한 시점에 시작함으로써 그 시기는 보험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간·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 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합,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

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 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습니다.

- ①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됩니다.
 ②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예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제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테러행위 부보장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 ①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1. 물리적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2.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3.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②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1.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2.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념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들)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②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③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1조(적용특칙)

회사는 이 보험이 피보험자 당사자에게 가장 우선하고 타 보험과 분담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책임액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타 보험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담 혹은 손해분담의 주장을 포기합니다.

제2조(보험의 양도 / 보험금 수령인 조항)

- ① 년 월 일자 체결된 보험양도협정에 따라, 차주는 보험증권 상의 모든 권리, 지역 및 이익(모든 보험금 및 보험료의 환급을 포함한)을 Security Agent 와 Secured Creditors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② 보험과 관련한 차주에게 지급될 모든 금액이 원화일 경우, intercreditor agent 로부터 직접 명기된 타명의 계좌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을 때까지, 다음의 ()의 원화계좌로 지급 됩니다.(계좌번호 :)

제3조(대위권 포기)

회사는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손해발생 시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서 담보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 법인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Secured Creditors 의 책임)

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Secured Creditors 는 회사에게 보험료 납입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인정 합니다.

제5조(변경)

Intercreditor Agent 와 회사는 사전동의 없이 보험증권상의 어떠한 사항(보상한도의 감액 또는 보험조건, 자기부담금의 상향조정, 면책사항 및 예외사항을 포함)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제6조(손해분담 포기)

회사는 Secured Creditors, Intercreditor Agent 또는 Security Agent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여타의 다른 보험에 대한 손해분담권리를 포기합니다.

제7조(취소, 축소 및 보험담보)

- 회사는 Intercreditor Agent 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 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계약의 종료 행위 이전 최소 45일(또는 테러, 전쟁 등 동질의 위험의 경우 더 짧은 기간) 이전에 회사는 Intercreditor Agent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만약 회사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로 보험증권을 취소 또는 전체 또는 일부의 보험담보를 취소할 경우,
 - 2. 보상한도의 감액 또는 담보변경, 자기부담금의 증액, 면책사항 또는 예외사항, 원계약 증권상의 만기일 이전의 계약종료
- ② 보험료 납입의 불이행의 경우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만약 회사가 차주 또는 여타 피보험자 또는 Intercreditor 로부터 보험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만기일 최소 45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갱신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즉시 Intercreditor Agent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무효로 만들거나, 집행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행위나 누락 또는 사건을 피보험자가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조(통보 / 커뮤니케이션)

- ① 이 조건 또는 증권상의 모든 통지 또는 기타 연락사항은 팩스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1. 만약 팩스로 송부될 경우, 전송 후 즉시 송신자의 팩스기에 전송이 올바르게 되었음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② Intercreditor Agent 의 주소 및 팩스번호는 Intercreditor Agent 에 의해 대주의 대리인(보험 계약 중개인 등)에게 통보됩니다.
- ③ Intercreditor Agent 와 Security Agent 의 최초 통보 주소 및 팩스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ecurity Agent 및 Intercreditor :
 주소 :
 팩스 :
 이메일 :
 수신처 :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PROPERTY TREATY (RE)INSURANCE) [LMA5394]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re)insurance agreement, this (re)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ny loss, damage, liability, claim,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or event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other sequence thereto.
2.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 2.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 2.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 2.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damage to human health or human welfare or can cause or threaten damage to, deterioration of, loss of value of, marketability of or loss of use of property.

감염병 면책조항 (재물 특약 (재)보험) [LMA5394]

1. 본 (재)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체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 피해, 배상책임, 클레임, 비용 또는 경비는 그 성질을 불문하고 본 (재)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해당 손실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된다.
2. 본 계약서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된다.
 -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이 포함되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
 -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
 -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인간의 건강이나 안위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 손상, 가치 상실, 상품성 훼손, 사용손실을 야기하거나 이러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

협이 되는 경우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LMA5399]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re)insurance agreement, this (re)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ll actual or alleged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s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urred by or accruing to the (re)insur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originating from, caused by, arising out of,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2.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 2.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 2.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 2.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bodily injury, illness, emotional distress or damage to human health, human welfare or property damage.

The below version in Korean language is for translation purpose only. In case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version (which is original) and the Korean version (which is for translation purpose only), the English version always prevails and shall be the only original contractual wording binding on the parties in case of any dispute.

[LMA5399] 감염병 면책 조항

1. 본 (재)보험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체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출재)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재)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계약서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이하의 국문은 위 영문 원문을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본입니다. 영문본(원본)과 국문본(번역본) 사이에 여하한 상이점이 있을 경우, 언제나 영문본이 우선하며, 오로지 영문본만이 분쟁 발생시 당사자 사이의 유일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됩니다.

제1부분 재물손해조항 특별약관

연속사고 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같은 형태의 기계나 장비에 설게 결함, 재질 및 구조의 결함, 작업상의 졸렬 등과 같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명기된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횟수에 따라 아래 명기된 보상비율을 적용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사고횟수에 따른 보상의 제한 최초의 사고 () %
- 두 번째 사고 () %
- 세 번째 사고 () %
- 네 번째 사고 () %
- 다섯 번째 사고 () %
- 여섯 번째 사고부터 보상하지 않음.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 및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기간동안 유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한도액 및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7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나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

하여 계약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인 개인이나 회사, 법인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전문용역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복구하여야 할 경우, 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기술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 용역비는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손해액에 포함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제조달가액 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 ①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에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조달가액(보험자의 보상액이 증가되지 않는 한, 피보험자가 원하는 방법과 장소에서 제조달가액을 할 수 있음)은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본 조항이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상되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2조(용어정의)

제1조의 제조달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목적물이 전부 손해를 입은 때 : 건물의 경우에는 재축, 다른 목적물의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물로 대체. 단, 보상은 신품의 상태보다 개선되거나 더 우수하지 않은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목적물이 일부손해를 입은 때 : 손상된 부분의 수리나 복구. 단, 보상은 신품의 상태보다 개선되거나 더 우수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상기 조항을 이유로 재축이나 복구에 소요된 비용이 보험자에게 의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피보험자가 재축 또는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시의 목적물의 시가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잔존물 제거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상가능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보험목적물의 제거, 철거, 지지하는 잔존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증권상 명기된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합니다.

-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 다만,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공공기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복구하여야 할 경우, 이의 복구와 관련된 법규를 따르기 위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경우로 생긴 추가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손해가 본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또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개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 2. 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에 대해 사고 발생 이전에 시정조치 지시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내려진 경우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의 추가비용은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손해액에 포함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소규모 공사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총공사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설, 조립 또는 증설공사 시에 발생한 재물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예정이익의 상실 등 기업휴지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한도)

- ① 공사당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② 소규모 건설, 조립 또는 증설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별도의 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의 초과분만을 담보합니다.

제3조(적용 예외)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증권의 제반조건에 따라 담보되는, 통상적인 작업(피보험자가 그러하다고 인정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유지 관리 또는 수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소방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익하게 지출한 소방비용을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소방비용은 소요된 자재비를 포함하여 소화기 충전비용, 스프링클러헤드 교체비용, 관련된 인건비 등과 소방서에서 피보험자에게 청구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피보험자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서면으로 회사에 증명해야 하며, 회사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추가재산 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추가된 재산에 대하여 그 추가된 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추가재산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재산이나 다른 보험계약 가입여부를 불문한 재고자산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한도)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3조(추가재산 명세 제출 및 보험료 정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매회 추가재산에 대한 명세를 취득 또는 증가시점으로부터 2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추가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며 보험기간 종료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특별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입, 기타 긴급한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당해 손해 목적물의 임시적인 수리나 긴급한 수리 또는 대체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추가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위험물질 제거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동안 누출 및 오염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단, 기계장치에 한함)에 발생한 청소, 수리, 교환, 오탁제거비용을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사고현장 및 보험의 목적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재고자산 제외)이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어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 중 및 대한민국내의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로 통하여 그러한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담보장소를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 담보장소에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각 보험의 목적(재고자산 제외)별 보상금액은 철거하기 이전의 장소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적용 예외)

이 특별약관은 기계장치 및 공장시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피보험자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하며 재고자산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입금액(단, 재고자산부분을 제외합니다)이 보험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보험가입액의 보험증권에 명기된 비율(이하 「부보비율」 이라 합니다) 상당 이상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제1부분 재물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및 제2항을 아래로 대체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를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신조달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손해액} - \text{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가액}) - \text{자기부담금}$$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를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 \text{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가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times \text{부보비율}} - \text{자기부담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1부분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제2부분 기업휴지손해조항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 및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기간동안 유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한도액 및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2부분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2부분 기업휴지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쓰나미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직접이고 물리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중단 또는 휴지(休止)되어 생긴 손해를 이 부분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2부분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7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나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계약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인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2부분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제3부문 배상책임손해조항 특별약관

자연재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대위권)

회사는 제3부문(배상책임손해 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호 및 입차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진, 분화, 태풍, 회오리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3부문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추가피해방지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후 복구명령서에 의해 피보험자 외 제3자의 추가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이에 대한 추가피해 방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복구명령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나 개시된 복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1항의 사고란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말합니다.
- 제1항의 복구명령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소속된 정부조직과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피보험자에게 발급하는 복구와 관련된 이행명령이 담겨있는 문서를 말하며, 사고발생일(사고발생 이후 선조치를 진행한 경우엔 선조치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효력을 갖습니다.
- 제1항의 복구란 복구명령서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피보험자 외 제3자의 추가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 등 일체의 관련행위를 말합니다.
- 제1항의 복구명령서 발급일이란 복구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태양광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제4호 제나목에 따라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자연재해	지진, 분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풍제, 수재 및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종업원의 고의
-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가입한 태양광발전소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
- 전쟁 또는 전쟁위협, 침입, 외국군대의 행위, 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하고 적대적인 시민전쟁, 혁명, 군대의 반란 또는 정권찬탈, 몰수, 국유화,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재물에 대한 징발, 파괴 또는 손실
- 민중봉기,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준하는 사태, 폭동, 계엄령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기관의 행위
- 검역소 또는 세관의 규제하의 압류 및 파괴행위,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타 지방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손실 또는 필수품의 취급이나 불법적인 무역 또는 수송

- 그 종류를 불문하고 시민 또는 주민들에게 강제할 것을 명령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법률의 집행, 그 종류를 불문하고 본국송환, 억류, 투옥, 추방 또는 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 또는 국가 내로의 진입허가 및 잔류허가의 취소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실에 직접적으로 기인되지 않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동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유출, 대기오염, 수질오염
- 복구 진행 중 발생한 지진, 분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풍제, 수재 및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중된 손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 또는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 태양광발전시설이 소속된 정부조직과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복구명령서 없이 복구가 진행된 경우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복구내역서(도급계약서 등)
-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 증권
- 태양광발전시설이 소속된 정부조직과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복구명령서
-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3부문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3부문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일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3부문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물적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3부문 배상책임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발품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9.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배상책임을 목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재물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입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3부분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7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3부분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전염병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염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3부분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전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류된 아래 표에 기재된 병으로 한정합니다.

(표) 전염병의 기준별 분류

분류	
제1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 전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百日咳), 과상풍(破傷風), 홍역(紅痘),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水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패렴구균
제3군 전염병	말라리아, 결핵(結核), 한센병, 성홍열(猩紅熱),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찌꺼기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炭疽),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梅毒),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전기공급차질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3부분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실리카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실리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실리카(이산화규소)】

실리카란 광물, 이산화규소 등을 포함하는 여타 형태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실리카 함유 제품, 상품, 섬유 또는 물질 및 이로 부터 배출되는 가스, 수증기, 냄새와 규산 또는 규산 광물(모래, 석영, 슬레이트, 화강암, 플린트) 등을 포함합니다.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및 소음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전자파, 전자장(EMF)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임차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부분만 해당합니다)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배상책임을 목적으로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자연소모, 녹, 쥐가 쏘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과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전액
 - 다.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X	$\frac{\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
-------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목적으로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부분(배상책임손해조항) 제6조(보험금의 분담)의 제1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 및 제3부분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별표] 단기요율표

일 수(일)	요율(%)	일 수(일)	요율(%)
1	5	154~156	53
2	6	157~160	54
3~4	7	161~164	55
5~6	8	165~167	56
7~8	9	168~171	57
9~10	10	172~175	58
11~12	11	176~178	59
13~14	12	179~182	60
15~16	13	183~187	61
17~18	14	188~191	62
19~20	15	192~196	63
21~22	16	197~200	64
23~25	17	201~205	65
26~29	18	206~209	66
30~32	19	210~214	67
33~36	20	215~218	68
37~40	21	219~223	69
41~43	22	224~228	70
44~47	23	229~232	71
48~51	24	233~237	72
52~54	25	238~241	73
55~58	26	242~246	74
59~62	27	247~250	75
63~65	28	251~255	76
66~69	29	256~260	77
70~73	30	261~264	78
74~76	31	265~269	79
77~80	32	270~273	80
81~83	33	274~278	81
84~87	34	279~282	82
88~91	35	283~287	83
92~94	36	288~291	84
95~98	37	292~296	85
99~102	38	297~301	86
103~105	39	302~305	87
106~109	40	306~310	88
110~113	41	311~314	89
114~116	42	315~319	90
117~120	43	320~323	91
121~124	44	324~328	92
125~127	45	329~332	93
128~131	46	333~337	94
132~135	47	338~342	95
136~138	48	343~346	96
139~142	49	347~351	97
143~146	50	352~355	98
147~149	51	356~360	99
150~153	52	361~365	100

주)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계약에 대하여는 상기 단기요율을 적용합니다